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15
----------	-------

발의연월일 : 2026. 8. 24.

발 의 자 : 최은석 · 김상훈 · 안철수
김태규 · 김은혜 · 이소희
김선교 · 신성범 · 서명옥
김기웅 · 박덕흠 · 박대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신청 대상자”라 한다)이 없어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달리 신청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음.

이에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함이 확인되면 신청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단서 신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유공자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청 대상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기록 및 예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보훈부장관이 같은 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 ④ (생략)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 ----- ----- <u>. 다만, 국가유공자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u>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